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27

서 울 고 등 법 원

춘천제2행정부

판 결

사 건	(춘천)2017누669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A
피고, 항소인	[redacted]군수
제1심판결	춘천지방법원 2017. 7. 7. 선고 2017구합13 판결
변론종결	2017. 10. 23.
판결선고	2017. 11. 20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6. 6. 8. 원고에게 한 취득세(가산세 포함) 2,226,510원, 농어촌특별세(가산세 포함) 189,0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27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(피고의 주장취지 및 현재 근주가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취득한 것은 입목이 아니라 근주 등이 제외된 원목이라고 보일 뿐이다).

2. 결 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용빈

판사 박병규

판사 지창구